#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83

발의연월일: 2020. 9. 17.

발 의 자 : 양경숙 · 윤미향 · 아진비

김승원 · 정태호 · 김경협

남인순 · 민홍철 · 이탄희

김영호 의원(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과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과 육아휴직자 복직기업에 대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복직시킨 경우 해당 근로자 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세액공제 규모를 살펴보면 2017년도 약 3,000만원, 2018년도 약 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현행 공제 특례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활성화 등을 위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상 동일기업 혹은 동일업종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만을 공제요건에 포함하고 있어, 대다수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 및 종사상의 지위가 변경된다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동일기업 및 동일업종기업 복직' 요건을 삭제하는 등 실효성 있게 개선함으로써 여 성의 경제활동 장려와 노동인력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및 육아휴직자 복직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복직시킨 경우로서 고용 또는 복직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연장함(안 제29조의3제1항 및 제2항).
- 나. 경력단절 여성 고용 중견기업 및 육아휴직자를 복직시킨 중견기업 의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해당 인건비의 100분의 30으로 상향조정함(안 제29조의3제1항 및 제2항).
- 다. 경력단절 여성과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도 해당 인건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함(안 제29조의3 제1항).
- 라. 육아휴직자 복직기업의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육아휴직 복귀자 자 녀 1명당 한 차례만 적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제29조의3제4항 삭제).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근로계약"으로, "2년"을 "3년"으로,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100분의 30(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하고, 같은 항제1호 중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한 업종의 기업"을 "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1년"을 "3년"으로, "100분의 1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을 "경우일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년"을 "2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력단절 여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육아휴직자를 복직시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여성(이하 이 조 및 제30 조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라 한다)과 2020년 12월 31일까지 -----2025년 12월 31일----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 근로계약-----는 경우에는 고용한 날부터 2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 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 -----100분의 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30(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 한 경우에는 100분의 15)-----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 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 서 공제한다. 1.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1. <u>기업</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한 업종의 기업 에서 1년 이상 근무(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

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가 원 천징수되었던 사실이 확인되 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후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혼·임 신·출산·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 2. • 3. (생략)

②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 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 복귀자"라 한다)을 2 020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 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1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지 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 건비의 100분의 1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 상당하 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 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해당 과세연 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 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

2.•3. (현행과 같음)
②
<u>2</u>
<u>025년 12월 31일</u>
<u>3</u>
년
<u>100분의 30</u>
· · · · · · · · · · · · · · · · · · ·

니한다.

- 1.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이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
  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 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 3. (생략)
- ③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기업이 해 당 기업에 복직한 날부터 1년 이 지나기 전에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 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 액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 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 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은 육아휴직 복귀자의

<삭	제>

2
71 0 01 -1
경우일 것
3. (현행과 같음)
③
<u>2년</u>
,
<u>&lt;삭 제&gt;</u>

<u>자녀</u>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	
여 조	용한다	<u>.</u>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